

의안번호	제 263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5년 10월 2일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3
----------	-----

제출연월일: 2015. 10. 2.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14. 5. 28.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14. 11. 28. 공포)의 개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 5. 15. 공포) 개정에 따라 조례에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각종 기념행사 관련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3조)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지방보조금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수행상황 등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15년도 예산에 67,400천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8. 28. ~ 2015. 9. 17.):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행사”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관한 행사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법인 또는 단체”란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지방보조금 신청의 주체를 말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2. 한글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2년 이상 동일 기념행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①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

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고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목적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시행 2015.1.1.][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

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公款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公款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30.] [법률 제12915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6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5.15.] [조례 제3790호, 2015.5.15, 전부개정]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